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 | |
|--------|---------|
| 선 결 | 기 관 의 장 |
| | |



제 553 호

2012년 11월 9일 금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2012-1011호(인천광역시중구고문번호사운영조례전부개정
조례안) 3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2012-1012호(인천광역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
조례폐지조례안) 7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2012-1013호(인천광역시중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8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2012-1014호(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2012-1015호(인천광역시중구박물관건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2012-1016호(인천광역시중구마을상수도등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5
-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2012-1017호(인천광역시중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16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중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조 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권한대행 곽 하 형
부 구 청 장

2012. 11. 08.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011호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두는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1.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및 법률사안에 관한 사항
- 2.구 또는 구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 및
법률사안에 관한 사항
- 3.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 4.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 및
법률사안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입·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 등) 구청장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1.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 2.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3.그 밖에 위촉 해제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 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사건의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해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등) ①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및 사례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단,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문절차 등) ①제2조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기획감사실장은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 중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구 소속기관 전직원에게 전파하여 업무처리에 참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자문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사건실적부를 말한다)을 작성하여 월별로 비치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

[별표]

소송비용과 수당의 지급 기준(제6조 관련)

| 구 분 | | 지 급 기 준 | | 승 소 사 례 금 |
|---------------------------|---------------------|---------------------------------------------------------|--------------------------|--------------------------------------------------------------------------------------------------------------------|
| | | 내 용 | 착 수 금 | |
| 신청사건 | | 변론이 없는 경우 | 200,000 | 없 음 |
| | | 변론이 있는 경우 | 400,000 | |
| 민사 소송 · 행정 소송 | 소송물 가액 기준 | 2천만원미만 및 무소가사건 | 500,000 | 1. 전부승소시 착수금의 150% 2. 50%이상 승소시 에는 착수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
| | |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 1,000,000 | |
| | |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 1,500,000 | |
| | |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 2,000,000 | |
| | | 1억원이상 2억원미만 | 2,500,000 | |
| | | 2억원이상 3억원미만 | 3,000,000 | |
| | | 3억원이상 4억원미만 | 3,500,000 | |
| | | 4억원이상 5억원미만 | 4,000,000 | |
| | 5억원이상 | 4,500,000 | | |
| | | 상소심 | 본안소송 착수금 지급금액 | |
| | 환송사건 | 본안소송 착수금의 1/2이내 | | |
| 기 타 | | 1. 인 지 대 2. 송 달 료 3. 검 증 비 4. 감 정 료 5. 기타비용 | 실 액 실 액 실 액 실 액 | |
| 고문번호사 수 당 | | | 300,000원 이내 | |

1. 소가 5억원 이상은 5억원으로 본다
2. 수당, 착수금,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 건 실 적 부(제8조 관련)

| 연 번 | ○○사건 (업무) 관련 | 문의내용 | 회시내용 | 문의 및 회시 연월일 | 비 고 |
|------|------------------|------|------|------------------|------|
| | | | | |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권 한 대 행
부 구 청 장 광 하 형**

2012. 11. 08.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012호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소 송 사 건 수 행 증 인 등 의 실 비 변 상 조 례 폐 지 조 례

인천광역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중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권 한 대 행
부 구 청 장 광 하 형**

2012. 11. 08.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013호

인 천 광 역 시 중 구 행 정 법 규 상 담 실 설 치 운 영 조 례 폐 지 조 례

인천광역시중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권 한 대 행
부 구 청 장 광 하 형**

2012년. 11. 08.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014호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지 방 공 무 원 의 료 업 무 수 당 지 급 조 례 일 부 개 정 조 례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호에서 위임된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 2.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u>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이하"영"이라 한다)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u>영[별표9]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직공무원 의사: <u>[별표1]의 지급 구분표</u> 2.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 <u>[별표2]의 지급 구분표</u> | <p><u>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u>」 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호에서 위임된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u>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u>」 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호에 따라 「<u>의료법</u>」 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를 직접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u>별표 1의 지급 구분표</u>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u>별표 2의 지급 구분표</u> |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구분표

| 현 | | 개 | | 정 | | 안 | |
|--------------|--------------------|------------------|-----------------|------------------|------------------|------------------|------------------|
| 등급별 근무년수별 | 가 | 나 | 가 | 나 | 가 | 나 | 다 |
| 5년 이상 | 월 1,312,000원 이하 | 월 973,000원 이하 | 월 1,312,000원 이하 | 월 973,000원 이하 | 월 973,000원 이하 | 월 634,000원 이하 | 월 634,000원 이하 |
| 4년 이상 | 월 1,306,000원 이하 | 월 967,000원 이하 | 월 1,306,000원 이하 | 월 967,000원 이하 | 월 967,000원 이하 | 월 628,000원 이하 | 월 628,000원 이하 |
| 3년 이상 | 월 1,300,000원 이하 | 월 961,000원 이하 | 월 1,300,000원 이하 | 월 961,000원 이하 | 월 961,000원 이하 | 월 622,000원 이하 | 월 622,000원 이하 |
| 2년 이상 | 월 1,295,000원 이하 | 월 956,000원 이하 | 월 1,295,000원 이하 | 월 956,000원 이하 | 월 956,000원 이하 | 월 617,000원 이하 | 월 617,000원 이하 |
| 2년 미만 | 월 1,289,000원 이하 | 월 950,000원 이하 | 월 1,289,000원 이하 | 월 950,000원 이하 | 월 950,000원 이하 | 월 611,000원 이하 | 월 611,000원 이하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권한대행
부 구 청 장 관 하 형**

2012. 11. 08.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015호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 2.매주 월요일(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말한다)
- 3.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4조제1항 중 “6시”를 “9시”로 하고, “10시”를 “6시”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 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박물관 관람료

| 구 분 | 관람료 | | | | 비 고 |
|------------------|--------|--------|------|-----------------|-----------|
| | 성인 | 청소년 | 군·경 | 어린이 (7세~12세) | |
|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 500원 | 300원 | 300원 | 200원 | |
| | 300원 | 200원 | 200원 | 100원 | 단체 20인 이상 |
| 개항박물관 | 500원 | 300원 | 300원 | 200원 | |
| | 300원 | 200원 | 200원 | 100원 | 단체 20인 이상 |
| 짜장면박물관 | 1,000원 | 700원 | 500원 | 500원 | |
| | 800원 | 500원 | 400원 | 400원 | 단체 20인 이상 |
| 3개관 통합관람시 | 1,700원 | 1,100원 | 900원 | 800원 | |
| | 1,300원 | 800원 | 700원 | 500원 | 단체 20인 이상 |

신 · 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개관 및 휴관) ① (생략)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1월 1일, 설날, 추석</u></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2. <u>기타</u>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p> | <p>제3조(개관 및 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1. <u>1월 1일, 설날 연휴(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연휴(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u> 2. <u>매주 월요일(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u> 3. <u>그 밖에</u>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p> |
| <p>제4조(관람)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u>6시부터</u> 오후 <u>10시</u>까지로 한다. ②~③ (생략)</p> | <p>제4조(관람) ① ----- --9시-- -- 6시----- ②~③ (현행과 같음)</p> |
| <p>제5조(관람료) ①~②(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3.(생략) 4. 「<u>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수당을 지급받는 자 5.~10.(생략)</p> | <p>제5조(관람료) ①~②(현행과 같음) ③----- ----- 1.~3.(현행과 같음) 4.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u>」----- ----- 5.~10.(현행과 같음)</p>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상수도 등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권한대행
부 구 청 장 광 하 형**

2012. 11. 08.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016호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상수도 등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상수도 등 관리·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권 한 대 행
부 구 청 장 곽 하 형**

2012. 11. 08.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017호

**인 천 광 역 시 중 구 보 건 진 료 소 운 영 협 의 회 설 치 · 운 영 조 례
전 부 개 정 조 례**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 천 광 역 시 중 구 보 건 진 료 소 운 영 협 의 회 의 조 직 과 운 영 에
관 한 조 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 등) ①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의 관할 구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는 제3조의 정관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재해야 한다.

- 1.명칭
- 2.기능

- 3.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
- 4.임원 및 운영위원회
- 5.정관의 변경
- 6.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항 등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 2.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 3.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 4.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 5.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
- 6.그 밖에 보건진료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5조(조직 등) ①협의회는 각 통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 ③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①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회 장 1명
- 2.부회장 1명
- 3.운영위원 15명 이내
- 4.감 사 1명
- ②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재정) ①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자발적 찬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②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위촉 등) ①구청장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임원으로 위촉한다.

②구청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2. 스스로가 사임을 원한 때
-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보건진료소의 진료수입으로 적립된 협의회의 기금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적용하여 보건진료소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결산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세외수입으로 조치한다.